

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,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 신봉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
유*원	2002.09.09.	수지구 신봉*로71번길 25, 308동 30*호	19.10.01.~20.09.30.
윤*지	2002.09.05.	수지구 신봉*로 214, 508동 40*호	19.10.01.~20.09.30.
김*웅	2002.09.21.	수지구 신봉*로11번길 10-7, 202동 130*호	19.10.01.~20.09.30.
오*진	2002.09.05.	수지구 신봉*로 93, 103동 50*호	19.10.01.~20.09.30.

<주민등록증 발급순서>

- 1)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
- 2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)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(리)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(신분증명서 지참)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3)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1매 (3.5x4.5cm)를 지참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1매 추가)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
문의전화 : 031-324-8644

담당자 : 김연주

2019. 10. 17.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장

(인)

